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4차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통일교육 실시 결과 평가 규정 신설〉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62호)

2024. 1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사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윤후덕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 2024. 8. 13.
3.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일교육 실시 의무 외에 이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며,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6조의7제3항, 같은 조 제4항·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재를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7(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⑤ 그 밖에 통일교육의 방법, 실시 시기, 결과 제출 및 통일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현행법 제6조의7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통일교육의 방법 및 실시 시기 등 통일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 제5조의3¹⁾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1)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3(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의 실시) ①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공공부문 통일교육은 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까지 그 결과를 통일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의 공공부문 이수자 현황을 살펴보면, 이수자 현황은 86~89%로 나타남.

〈연도별 통일교육 이수자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수 대상자	1,124,955명	1,153,948명	1,217,402명
교육 이수자	972,852명	997,537명	1,082,349명
이수율	86.5%	86.4%	88.9%

- 개정안은 공무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통일부장관이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각 기관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통일교육에 대한 점검 및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실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조의7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통일교육 결과보고서에 전년도 통일교육 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안과 같이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 시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여러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음.

〈유사 입법례〉

법률명	점검 조항	평가항목 포함 조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이하 생략)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 및 제5항에 따라 확인된 사실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 참고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시 그 결과를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구체적 사례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²⁾가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을 들 수 있음³⁾.

이와 같은 사례에 비추어 통일교육 실시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경우 통일교육을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북한이탈주민법상 공공부문 평가 반영 사례〉

평가명	평가대상	근거법령 (주관부처)	평가지표 및 배점
인사혁신 수준진단	중앙행정기관(46개) * 정부업무평가 대상과 일치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 사회통합형 통합인사 노력도 - 북한이탈주민 채용 시 1.5점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7개 시·도 * 시군구 실적포함	정부업무평가법 (행정안전부)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활동성과 - 북한이탈주민 채용실적 10점
공공기관 경영평가	공기업(32개), 준정부기관(55개)	정부업무평가법 (기획재정부)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 북한이탈주민 채용노력(비계량)

□ 통일부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통일교육 실시 결과의 정기 점검, 기관평가 반영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공부문 통일교육의 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표개발 및 반영은 매년 평가계획 수립 시 주관부처를 통해 협의하고, 평가에 따른 결과는 인사혁신수준 진단의 경우 차년도 인사계획 수립시 반영하며, 지자체·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법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하는 입장인 반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평가의 기본원칙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기준·방법 등은 시행령에 따라 평가편람에 규정하는 구조로써, 현행법 체계상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64